Yeosu
Web Contents

2024년 05월 02일 22시 32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3

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

2014.04.17 조회수 60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6
담당부서	도시디자인과
상위법령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
조례	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13-05-03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5-03
규제내용	제5조(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)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. 1. 「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(이하 “도 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.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.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.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.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

목록

이전글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5

다음글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7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